

우리장애이사랑신탁 상품설명서

1 신탁 개요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『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』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는 신탁상품입니다.

가입대상	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
신탁재산	금전
운용자산	고객 지정 상품 (MMT, 예금, 파생결합증권 등)
신탁기간	장애인 본인 사망 시까지
신탁보수	운용자산별 상이 - 발행어음, 예금 등 연 0.2% - 파생결합증권 등 연 0.5%



2 주요 내용

구분	내용
가입대상	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
가입한도	5억원 (단, 초과 시 특약 작성)
중도해지	가능 (단, 증여세 추징 가능)
위험등급	운용자산별 상이(운용시 제공되는 운용자산설명서 참고)
신탁형태	특정금전신탁
중도인출	의료비, 교육비, 생활비에 한함
수익금	고객 지정방식으로 지급 가능

- 가입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합니다.
(신탁재산은 금전에 한함)
- 중도인출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,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에 한해 가능합니다.
- 장애인이 신탁계약상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.
- 신탁 기간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입니다. 단, 중도해지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인출 시, 원금인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3개월 전부터 인출일 후 3개월 이내에 수탁 기관(은행)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장애인의 생전 수증 재산을 합산하여 5억원까지 입니다.

신탁재산 운용

- 운용상품 매수, 매도 시 결제일 시차 발생,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현금성 자산(고유계정대)으로 운용되며, 이 경우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
- 운용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중도해지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운용자산별 매수일은 운용 지시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 신탁재산 운용관련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운용자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 주요 위험고지 및 유의사항 안내

○ 주요 위험요인

시장위험 및 개별위험	본 신탁상품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.
유동성 및 자산가치 변동위험	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○ 위탁자 유의사항

관련 법령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」에 따른 상품으로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증여세 추징	아래의 사유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 - 同 신탁 중도해지 - 의료비, 교육비, 생활비 이외 사유로 인한 인출시 -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신고시
예금자보호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써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. 본 상품은 운용상품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원천징수	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,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 - 매 분기말(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) - 신탁 해지일 또는 이익지급일(원본가산일 포함) -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 (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구속성 제한	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·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중도해지에 관한 사항	신탁계약기간만료 전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,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미 도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청약의 철회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, 계약체결일(또는 계약서류 제공일)부터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·재화 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, 금전·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 관련 사항	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합니다. 위 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중 먼저 도래 하는 날까지 가능하며,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.
자료열람 요구권 안내	당행의 「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」에 의거하여,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비예금상품 관련 사항	2020년 9월 28일 제정된 「은행 비예금상품내부통제 모범기준」 의거, 비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상품별/고객별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기타제한 사항	이 신탁상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.

4 기타

- 본 설명서 및 계약서는 음성 지원 기능이 가능합니다.
 - 「점자」 계약서 및 상품자료가 필요하신 경우, 영업점에 의뢰시 「점자」 상품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(자료발급까지 약 3영업일 정도 소요예정)
 - 5억원을 초과한 금전을 신탁할 경우,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.
 - 가입한 신탁계약서를 증여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 상품은 우리은행 신탁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영업점, 우리은행 고객센터 (02-2008-5000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woori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.